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45

발의연월일: 2021. 3. 5.

발 의 자:윤재옥·태영호·김희곤

최춘식 · 김승수 · 정희용

양금희 · 홍문표 · 정진석
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, 이는 20 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 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.

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	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
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감면) ①
장애인(제29조제4항에 따른 국	
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, 이하	
이 조에서 "장애인"이라 한다)	
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	
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「지	
방세법」 제125조제1항에 따른	
자동차세(이하"자동차세"라 한	
다)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	
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	
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	
자동차세를 각각 <u>2021년 12월</u>	<u>2024년 12월</u>
31일까지 면제한다.	<u> 31일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